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35回平昌郡議會

第 2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1995年 10月 28日(土) 12時00分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1. 1995年度下半期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結果報告의件
2.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改正條例案
3. 平昌郡政調整委員會條例중改正條例案
4. 平昌郡條例.規則중公布에關한條例중改正條例案
5. 平昌郡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중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1. 報告事項 _____ 2 面
2. 1995年度下半期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結果報告의件(禹康鎬議員外6人提出)
_____ 2 面
3.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_____ 4 面
4. 平昌郡政調整委員會條例중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_____ 5 面
5. 平昌郡條例.規則중公布에關한條例중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_____ 5 面
6. 平昌郡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중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_____ 7 面

(12時00分 閉議)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3일간의 이번 회기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장기간에 걸친 현지확
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신데 감사
드리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활동한 사항을 종합한 결
과와 중요 조제안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
어 있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
들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사무과장으로부터 듣도
록 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

(12時01分)

○ 事務課長 李京植 : 사무과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실음)

2. 1995年度下半年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
認結果報告의件(禹康鎬議員外6人提出)
(12時02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1항 1995
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우강호의원 나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95년도 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16일 제35회 평창군의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계획에 의거 62개사업장에 대한 현지확
인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확인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에 목
표한 정상적인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달동네 정비사업을 비롯한 일부사업과
금년 수해피해 복구사업이 발주 및 시공
이 늦어져 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다수 있었으며,
특히 타기관 발주사업중 지역주민이 이

용할 일부 사업이 사업발주처가 다르다
 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전혀 관심을 기울
 이지 않아 향후 시공상의 문제점이 발생
 될시 피해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안
 타까운 사례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군 본청과 읍면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각종 관내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므로 미래의 민원
 발생요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집행
 부의 실천의지가 더한층 요구되는 부분
 이 많았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으로 발생하는 환경훼손
 및 오염문제등 기타 제반 문제점들을 면
 밀히 분석 검토하는 집행부의 노력도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 해결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군민들이 행정기관을 신
 뢰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가일층 노력
 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온군민이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속에서 희망
 을 갖고 복된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행정

력을 총 동원하여 민을 최우선시 하는
 위민행정을 실천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
 다. 아울러 이번 현지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기에 실현되도록 함은 물론 집
 행기관으로 하여금 군정시책에 적극 반
 영되도록 하고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지확인 활동이 의원 여
 러분에게는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를 대비한 뜻
 깊은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정보획득에 크게 도
 움이 되고, 집행부에서는 다시한번 성실
 한 업무수행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
 기를 바라면서 '9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
 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
 < 參 照 >

. 1995年度下半年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
 認結果報告書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지금 우강호의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그러면 지금 보고된 '9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는 내실있는 군정수행을 촉구토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통보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이것으로 '9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3.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12時06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金榮柱 : 사회과장입니다.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시대에 민선단체장의 정책기능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6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정원으로 군수 정책보좌관을 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본청에 4급 지방행정정책보좌관 정원1인을 순수하게 증원시키려는 사항입니다.

이에따른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參 照 >

.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중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실음)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4. 平昌郡政調整委員會條例중改正條例案
- 5. 平昌郡條例.規則등公布에관한條例중改正條例案 (以上2件 平昌郡守 提出)

(12時09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3항 평창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제4항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평창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는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중 조례규칙은 적법과 타당성 확보및 제정절차의 신뢰성, 합리성 보장을 위하여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의 의결기구인 조례규칙심의회를 군정조정위원회와 별도로 구성 운영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4항의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중 조례규칙 사항을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 조례의 일부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해서 조례규칙의 공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나 규칙의 공포방법을 군보나 일반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군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조례규칙의 공포일은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날 또는 게시된 날로 하던것을 군보가 발행된 날로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參 照 >

- 平昌郡政調整委員會條例중改正條例案
- 平昌郡條例.規則등公布에관한條例중改定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실음)

그럼 2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平昌郡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증改正條例
案 (平昌郡守 提出)

(12時12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5항 평창
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 지역경제과장
강경석 입니다.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조례는 89년도 4월 17
일 개정된 내용으로 현실에 부적합한 부
분이 많아 이를 조정하고 주차요금및 징
수 방법등을 형평성 있게 개정,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요금
의 경감입니다. 주차장 이용차량이 2

시간 초과 주차시에는 오랜시간 주차하
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100
%를 가산하고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50%의 주차요금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임의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
차요금의 4배를 징수하고 주차요금과 가
산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관리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시 현행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을 납부하
여야 하나 주차장 면적에 개별시가를 곱
한 금액에 100분의 5를 도로점용료를 납
부할 경우 개별지가가 높아 도로점용료
를 과다 납부하므로 인건비 제상도 어려
운 실정으로 적자운영에 직면하게 되어
유료주차장 위탁관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 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를 선정하여 주차면수별
로 각각 누진료를 징수토록 하여 위탁
관리 단체에 우선 복지및 불법 주정차
금지로 인한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을 도

모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의
폐지 입니다.

30분단위 주차료 부담이 1일주차료와 월
정기주차요금보다 과중됨으로 인해서 주
차료간의 형평성이 결여 됩니다.

네번째, 주차요금의 인상입니다.

1급지 승용자동차 주차요금을 현행 250
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고 2급지 승용
자동차 주차요금을 8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며 1급지, 2급지에 승용자동차 외
의 자동차는 500원을 600원으로, 200원
을 3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에 설치 기준개정
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장 전
용 건축물에 용적율및 높이제한, 부설주
차장의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
용의 제공등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 공영노외주차
장 무상사용기간은 납부금액을 1일 2시
간 기준으로 나누어서 그 만료일까지 하
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

안대로 심의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
다.

.....
< 參 照 >

. 平昌郡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중改正條
例案

(附錄에 실음)

.....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실음)

.....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
다.

그러면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계획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회기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정기회가 의원 여러분의 실무 연찬을 통하여 충실한 회기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3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폐회를 선포 합니다.

(12時19分 閉會)

○ 出席議員

議 長	金 樂 雲
副議長	李 相 薰
議 員	李 慶 鎮
議 員	劉 燉 文
議 員	李 洙 現
議 員	金 斗 經
議 員	禹 康 鎬
議 員	金 鍾 永

○ 出席公務員

郡 守	金 容 郁
副 郡 守	朴 商 滿
農村指導所長	劉 載 國
企 劃 室 長	申 大 松
文化公報室長	高 昶 植
社會振興課長	宋 在 明
地 籍 課 長	南 大 鉉
社 會 課 長	金 榮 柱
環境保護課長	李 敬 洙
家庭福祉課長	朴 靜 子
地域經濟課長	姜 慶 錫

畜産課長 鄭義秀
山林課長 李基椿
建設課長 洪基杓
民防衛課長 金昌吉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議會事務課

事務課長 李京植
專門委員 辛敦善
議事係長 咸京鎬
地方行政主事補 李錠均

【 議 席 】

○ 議席表 (13面に 실음)

.....
【 報 告 事 項 】

○ 文書發送

· 大和都市計劃事業決定에 대한意見提示
의件 - 平昌郡 移送 (95. 10. 21)

○ 議案接受

· 平昌郡住民登錄事務의 邑面委任條例중
改正條例案 (95. 10. 18 - 平昌郡守)

· 平昌郡事務의 邑面委任條例중改正條例
案 (95. 10. 20 - 平昌郡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시대 민선단체장의 정책기능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군 본청 내무과에 4급 (행정,군수 정책보좌관) 정원을 '96.12.31까지 정년을 기준으로한 개인별 한시정원으로 1명을 증원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책보좌관제 운용 시행지침상의 기본방침으로 볼때 모든 자치단체에 해당이 되는 효율적인 정책기능이라고 할수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만 한정된 것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어느 특정 개인만을 위한 한시정원제도라 할수 있음.
즉 정책보좌관이 명예퇴직,공로연수요원 발령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감축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임.
- 기타 체계및 자구, 상위법저촉등의 사항은 없음.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조례·규칙의 적법, 타당성 확보 및 제정 절차의 신뢰성·합법성 보장을 위하여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조례·규칙 심의회를 군정조정위원회와 별도로 구성 운영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4호의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조례·규칙사항을 제외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계획이 '95년 9월 4일 내무부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기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조례·규칙의 심의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전담하여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으나, 조례·규칙심의회와 위원회 구성원 자체가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원과 다를바 없어 제도상 형식적인 기능분리 사항임.
- 기타 체계 및 자구, 상위법저촉등의 사항은 없음.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조례의 일부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조례·규칙의 공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조례·규칙등을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있는것을 공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함.
- 나. 조례·규칙의 공포일은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날 또는 게시된 날로 하던것을 공보가 발행된 날로 개정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공포의 방법등에 있어서 군보나 일간신문에의게재 또는 게시판에 공고 또는 고시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공포방법의 일관성을 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금번에 공포방법은 공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공포일을 공보가 발행된날로 일원화하여 운용함으로써 조례공포 절차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는 사항임.
- 기타 체계및 자구, 상위법저촉등의 사항은 없음.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이 많아 이를 조정하고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등을 형평성 있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차요금의 경감

- 2시간초과 주차시 : 주차요금의 100% 가산
-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 주차요금의 50% 경감
- 임의 주차시 : 주차요금의 4배
- 주차요금과 가산금 체납자 :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

나.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해야 할 금액 조정

- 과표 :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 산정가액에 아래의
요율 누진적용

- | | | | |
|------|---|------------------|-------|
| ○ 요율 | ┌ | 주차면수 100면이하 | : 50% |
| | | 주차면수 101면~150면이하 | : 60% |
| | | 주차면수 151면~200면이하 | : 70% |

다.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주차료간 형평성 결여로 폐지

라. 주차요금을 인상

- 1급지 소형(승용)차량 : 250 ⇒ 300원
- 2급지 " : 80 ⇒ 100원으로 인상

- 마.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인근설치, 일반이용에의 제공등 조항을 개정 내지 신설
- 바. 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용적을 및 높이 제한
- 사.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제3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가 상위법에 위반되어 '95. 6. 7일 평창군수로부터 재의요구되어 6. 30일로 초대의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던 사항으로써 금번에 조항을 개정하여 제출된 조례임.
- 본조항중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존대비 50%~70%로 낮추어 개정한것은 군 세수증대에는 기여를 못할지라도 어려운 여건하에서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한 점진적인 방편이라 볼수있음
-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 되었고 주차요금의 현실화를 도모 하였으나 타 지역에 비해 아직도 낮은 형편인것은 농촌지역임을 감안한 사항임.
- 기타 체계 및 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음